

25일 구 공군대학부지를 취득한 토지 3만 2,340평 중 각종 공용의 청사나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달 1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는 것임.

- 본 위치는 시에서 당초 매입한 3만 2,340 평의 대부분(82.7%)이 구민체육센타, 동작 소방서, 기상청,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여고, 공원 등으로 공용시설(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바, 해당토지도 이런 종류의 입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주차장용도의 토지매각에 대하여

- 매각대상 재산목록 9번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의 10호 공장용지 924.5평(3,051 m²)에 대한 매각건은 영등포 근린공원 조성용으로 지난 '96년 12월 30일 구 OB액 주로부터 매입한 총 6필지 1만 9,532평(6 만 4,456m²)의 토지중 주차장, 공공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원조성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으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자료하는 것임.

바) 재건축지역내의 토지매각에 대하여

- 매각대상 재산목록 제10번인 중랑구 면목동 727의 658호 대지 69.1평(228m²)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시의 잔여지로서 보존 활용할 가치가 없으며,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해당 재건축조합에 매각함이 타당하며,
- 재산목록 제11번인 송파구 문정동 19의 2 호 대지 104.2평(344m²) 역시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적으며, 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해당 재건축조합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계약금액 기준)이 10 억 원 이상인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2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③(적용례) 제23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99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전통문화관 조성부지, 전통놀이마당 설치부지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아파트건립용도, 주차장용도 등으로 시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9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3건 토지 : 4필지 2,154.3m²(651.7평)
 건물 : 1동 168.6m²(51.0평)
- 처분 11건 토지 : 32필지 146,368.9m²
 (44,276.4평)
 건물 : 14동 28,230.2m²
 (8,539.6평)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다음 페이지에 계속)